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공보담당관 이준호

전화 02-530-4154 / 팩스 0502-193-1199

보도자료

2024. 6. 18.(화)

제목

「가수 A○○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사법방해 사건」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0조 제2항)

-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(부장검사 김태헌)는 금일(6. 18.) 가수 A○○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대표 등이 운전자 바꿔치기,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 등 사법방해를 한 사건에서,
 - A○○ 및 소속사 대표 B○○, 본부장 C○○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, 매니저 D○○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- 검찰은 송치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 및 법리 검토, 대검 영상감정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,
 - A○○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 상태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,
 - B○○이 A○○의 도피 장면과 대화내용이 저장된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하고, D○○이 실제로 저장장치를 인멸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하였습니다.
- 본건은 A○○을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입니다.
 -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,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-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'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'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'사법방해'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.

I

피고인 · 공소사실의 요지

성명	공소사실의 요지	처분
A○○ (32세, 가수)	<p>▶ A○○의 단독범행</p> <p>- '24. 5. 9. 23:44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(사고차량)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충돌,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 [특가법위반(위험 운전치상, 도주치상), 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]</p>	구속 기소
	<p>▶ A○○, B○○, C○○의 공동범행</p> <p>- 5. 10. 00:30경 A○○ 대신에 D○○가 경찰에 자수 하게 함 [범인도피교사]</p>	
B○○ (40세, 소속사 대표)	<p>▶ 5. 16. D○○에게 A○○이 사용한 다른 승합차(도피 차량)의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 [증거인멸교사]</p> <p>※ 검찰 추가 인지</p>	구속 기소
C○○ (38세, 소속사 본부장)	<p>▶ 5. 10. 00:00경 위 승용차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 [증거인멸]</p> <p>▶ 5. 10. 00:45경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D○○에게 위 승용차(사고차량) 키를 건네고 D○○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 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방조]</p>	
D○○ (38세, 소속사 매니저)	<p>▶ 5. 10. 00:45경 혈중알코올농도 0.103%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(사고차량)를 운전 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</p>	불구속 기소
	<p>▶ 5. 10. 02:00경 파출소에 허위 자수 [범인도피]</p>	
	<p>▶ 5. 17. 위 승합차(도피차량)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 [증거인멸]</p> <p>※ 검찰 추가 인지</p>	

II

수사 의의 및 참고사항

① 피고인 A○○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하였음을 명확하게 규명

- 사건 송치 후 ▲ 피고인들의 휴대폰 포렌식·통화내역 등을 전면 재분석하여 행적을 복원하고, ▲ CCTV 화질개선으로 과학적·물적 증거를 보강하였음
- 이를 통해 운전자 바뀌치기 등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 A○○이 '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'하였음을 뚜렷하게 규명함
 - CCTV 영상(주점 및 피고인 A○○의 아파트 등)에 의하면, 음주 이후 피고인 A○○의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,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하였으며,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 모습을 보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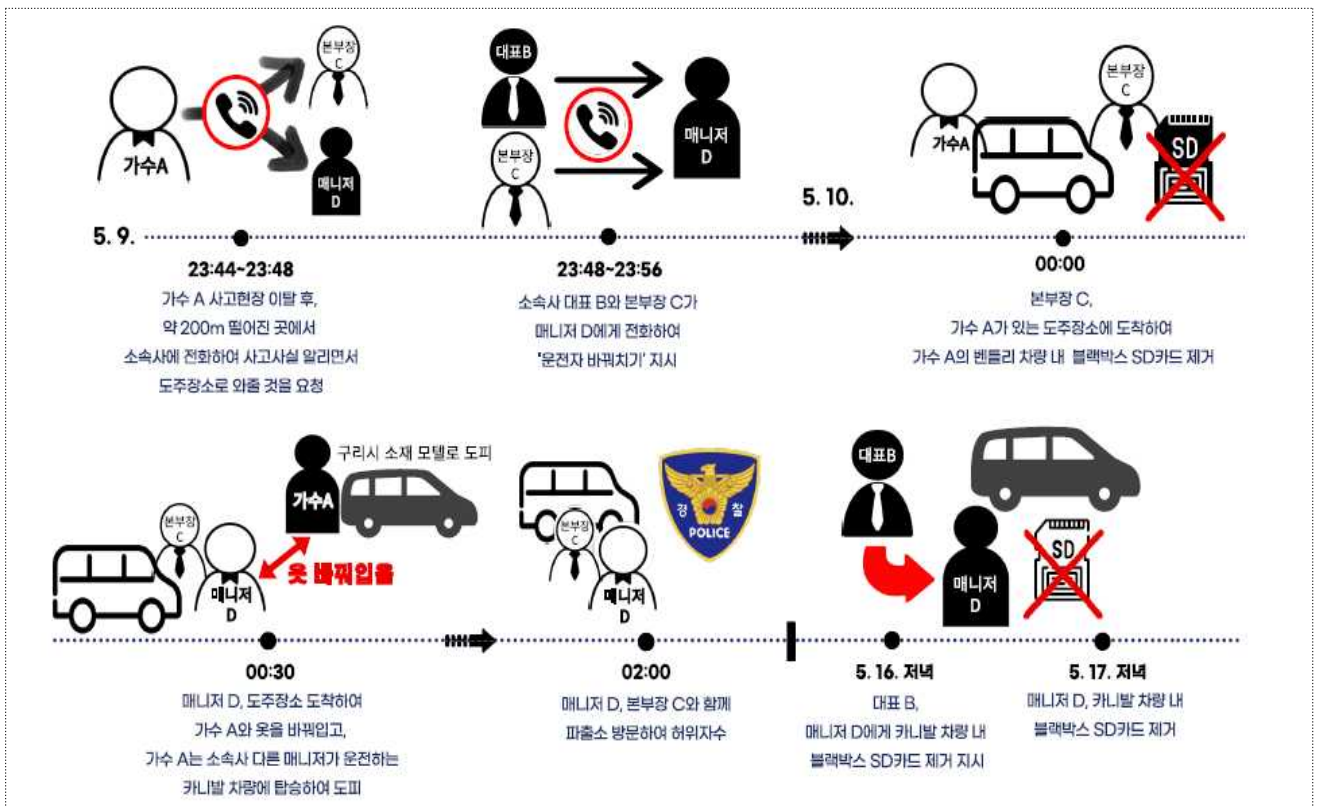
※ 사고 당시 관련자들 행적(시간순)



② 사법시스템 능력에도 엄정 대응

- ▲ 운전자 바꿔치기(허위 자수), ▲ 블랙박스 저장장치 인멸에 대하여 범인도피·증거인멸죄를 적용하여 기소함
- 아울러, 피고인 D○○가 피고인 A○○의 범행 은폐를 위하여 2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하여는 도교범위반(음주운전)죄로 기소함
- 추가로 피고인 B○○ 등이 피고인 A○○이 별도 이용한 도피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까지 인멸한 혐의를 밝혀내 기소함

※ 사고 이후 관련자들 행적(시간순)



③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하였음

-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범행 은폐 행위로 인해 피고인 A○○의 호흡 내지 혈액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음

○ 경찰은 피고인 A○○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여 0.031%로 특정(법령상 0.03% 부터 음주운전으로 기소), 송치하였음

○ 그러나, 피고인 A○○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움

- 위와 같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, 검찰은 피고인 A○○의 도교범위반(음주운전)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음

※ 관련 판례

-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사실인 음주량, 음주시각, 체중 등에 대해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(00도3307),

-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 소멸이 시작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(21도14074)

4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 절감

○ 조직화된 사법방해에 무력한 입법 공백을 명확하게 확인함

- 피고인 A○○은 막대한 수익과 투자 창출력*을 바탕으로 소속사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지위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

- 이로 인해 피고인 A○○을 정점으로 한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방해가 있었고, 피고인 A○○의 음주운전의 입증에 필요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음

- 결국 피고인 A○○의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「특가법 위반(위험운전치상)」으로 기소를 하지만, 사법방해로 인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「음주운전」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

- * 소속사는 2020년 피고인 A○○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년 대비 자산총계 약 4.8배(14.8억원 → 71.9억원), 매출액 약 2.9배(48.8억원 → 141.1억원), 영업이익 약 31.3배(1.1억원 → 34.4억원) 증가하였고,
 - 2022년에는 'I 회사'로부터 약 75억 원, 2023년에는 'J 회사'로부터 약 36억 원을 투자받음
 - 소속사 입장에서는 피고인 A○○의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이 알려질 경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였음

○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절실함

-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조직화되고 거듭된 거짓말로 범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음
-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,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

※ 대검찰청은 5. 20. 법무부에 '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'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한 바 있음

- 피고인 A○○은 사고 후 편의점에서 맥주 구입 등 추가 음주 정황이 있어 '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'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시, 본건과 같은 음주운전 범행 면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

Ⅲ 향후 계획

-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예정임 ☑